서울특별시 재난안전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

(이상욱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 2353 발 의 년 월 일:2025년 02월 03일 발 의 자:이상욱 의원(1명)

찬 성 자: 강석주, 고광민, 김규남,

김영철, 김원태, 김재진, 김태수, 김혜영, 남궁역, 남창진, 박 석, 송경택, 신동원, 옥재은, 유만희, 유정인, 윤종복, 이봉준, 이성배, 이종태, 이종환, 채수지, 허 훈, 홍국표, 황철규 의원(25명)

1. 제안이유

- 현재 재난안전 관련 산업은 소규모 · 영세기업 위주로 되어있어 자생 적 성장의 한계에 부딪혀 신기술 개발 촉진 · 보급 등 성장 동력 기반 을 마련하기 어려운 상황임.
- 이에 국회에서는 2023년 「재난안전산업 진흥법」 제정·시행하여 재난안전산업의 진흥을 위한 발판을 마련한 바 있음.
- 따라서 본 제정안을 통해 서울시 재난안전산업의 체계적 발전을 도 모하여 시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재난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재난안전산업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(안 제5조부터 안 제6조).
- 나. 재난안전산업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(안 제3조).
- 다. 재난안전산업의 사업에 관한 사항(안 제8조).
- 라. 재난안전산업의 위원회에 관한 사항(안 제9조부터 안 제16조).
- 마. 재난안전산업의 위탁에 관한 사항(안 제17조).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재난안전산업 진흥법」

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참조

서울특별시 재난안전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

- 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재난안전산업 진흥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서울특별시 재난안전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, 시민의 안전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「재난안전산업 진흥법」(이하"법"이라 한다) 제2조에 따른다.
- 제3조(책무) 서울특별시장(이하 "시장"이라 한다)은 재난안전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·발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개발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.
- 제4조(다른 조례와의 관계) 재난안전산업의 진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- 제5조(기본계획) ① 시장은 법 제5조에 따라 재난안전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을 (이하 "기본계획"이라 한다)을 5년마다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 -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 - 1. 재난안전산업의 중장기 정책 방향에 관한 사항
 - 2. 재난안전산업의 현황 분석 및 개선방안에 관한 사항

- 3. 재난안전산업 진흥에 관한 사항
- 4. 재난안전산업 진흥을 위한 재원 확보에 관한 사항
- 5. 재난안전산업 관련 교육, 홍보 및 지원에 관한 사항
- 6. 그 밖에 재난안전산업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- 제6조(시행계획)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·시행 하여야 한다.
- 제7조(실태조사) ① 시장은 서울특별시 재난안전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재난안전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.
 -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치구 및 관련 기관·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.
- 제8조(재난안전산업 진흥 사업) 시장은 재난안전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 - 1. 재난안전기술, 재난안전제품 및 관련 서비스 개발
 - 2. 재난안전제품의 표준화 및 상표 개발
 - 3. 재난안전산업 관련 교육 및 홍보
 - 4. 재난안전신기술 실증실험 및 기술경연
 - 5. 재난안전산업 전문인력 양성
 - 6. 재난안전 대응 공간·제품·시각·미디어·서비스 등 안전디자인 개발 및 품질평가
 - 7. 그 밖에 재난안전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- 제9조(위원회 설치) 시장은 재난안전산업의 진흥 등을 위해 서울특별시 재난안전산업 진흥위원회를 둘 수 있다.
- 제10조(위원회 기능) 서울특별시 재난안전산업 진흥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자문한다.
 - 1.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·시행에 관한 사항
 - 2. 제6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·시행에 관한 사항
 - 3. 제8조에 따른 재난안전산업 진흥 사업에 관한 사항
 - 3. 「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시행령」(이하 "영"이라 한다) 제7조제1항 에 따른 양성기관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
 - 4. 영 제7조제2항에 따른 재난안전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에 관한 사항
 - 6. 영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재난안전산업진흥시설의 지정에 관한사항
 - 5. 그 밖에 재난안전산업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- 제11조(위원회의 구성)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 - ② 공동위원장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 중 각 1명을 위원회에서 호선으로 선출하고,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.
 -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.

- 1. 당연직 위원
 - 가. 서울특별시 행정2부시장
 - 나. 서울특별시 재난안전실장
 - 다. 서울특별시 소속 공무원 중 시장이 재난안전산업 진흥과 관련하 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
- 2. 위촉직 위원
 - 가.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3명
 - 나. 서울특별시 공사·공단·출자·출연기관 중 재난안전사업과 연 관이 있는 임직원
 - 다. 재난안전산업 관련 기관·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
 - 라. 재난안전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
 - 마. 그 밖에 시장이 재난안전산업 진흥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람
- 제12조(위원의 임기)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보궐위원의 임기는 새로이 시작한다.
- 제13조(위원의 해촉)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.
 - 1. 「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8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
 - 2. 위촉위원이 위촉 당시 추천받은 단체 등에서 그 신분을 상실한 경우
 - 3.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

- 제14조(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) 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에 관하여는 「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8조의2에 따른다.
- 제15조(위원장의 직무)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,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
 -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,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- 제16조(위원회의 회의)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, 그 의장이 된다.
 -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 - ③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·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.
- 제17조(사무의 위탁) ① 시장은 재난안전산업 진흥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데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련 기관·법인·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.
 - 1. 제7조에 따른 실태조사
 - 2. 제8조에 따른 재난안전산업 진흥 사업

-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구체적인 사항은 「서울특별 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다.
- 제18조(표창) 시장은 재난안전산업 진흥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,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「서울특별시 표창 조례」에따라 표창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서울특별시 재난안전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

I. 비용추계 요약

- 1. 비용발생 요인
 - 서울특별시 재난안전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제7조(실태조사), 제8조(재난안전산업 진흥 사업), 제9조(위원회 설치) 및 제18조(표창)를 규정함에 따라 비용이 발생함

연번	조·항	추계대상 여부	판단 내용				
1	제7조(실태조사)	×	실태조사 관련 불필요한 예산 낭비 및 중복 사용을 지양하고자 행정안전부 실태조사 자료 중 서울시 재난안전산업 자료1)를 활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비용 추계에서 제외함				
2	제8조(재난안전산업 진흥 사업)	Δ	재난안전산업 진흥을 위한 사업의 명확하고 세부적인 분류/범위 및 현황 파악 등의 어려움이 있고, 관련기관이나 단체에 필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어 투입예산을 정확하게 산출할 수 없으므로 현 시점에서는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움				
3	제9조(위원회 설치)	0	재난안전산업진흥위원회 설치에 따른 비용 발생				
4	제18조(표창)	Δ	재난안전사업과 관련한 포상대상 및 규모 등이 구체적이지 않아 기술적으로 추계하기 어려우며, 통상적으로 서울시 관련부서에서 편성하는 포상 관련 예산으로 충당가능할 것으로 판단됨				

2. 비용추계의 전제

- 가. 대상
 - 제9조(위원회 설치)
- 나. 전제
- 비용은 2026년부터 발생하고 추계기간(2026~2030년) 이후에도 계속 발생
- 제8조의 위원회는 15명으로 구성하고 연 2회(상·하반기) 개최하는 것으로 전제
- 재난안전산업 진흥위원회 위원 중 3명을 공무원으로 전제
- 물가상승률 미반영
- 다. 추계기간 : 시행일로부터 5년(2026년~2030년)
- 3. 비용추계의 결과
 - 총비용 ≒ 28,500천원(연평균 5,700천원)

¹⁾ 행정안전부, 「2023년 재난안전산업 실태조사 연구용역 결과」, 승인통계, https://www.mois.go.kr/frt/bbs/type001/commonSelectBoardArticle.do?bbsId=BBSMSTR_000000000014&nttId=107495

(단위 : 천원)

구분	연도	1차년도	2차년도	3차년도	4차년도	5차년도	합계
지출	○ 제9조(위원회 설치)	5,700	5,700	5,700	5,700	5,700	28,500
	소계(a)	5,700	5,700	5,700	5,700	5,700	28,500
수입	-	-	-	-	-	-	177
	소계(b)	1.5	1.7	-	100	(1 12)	() - (
	□총 비용(a-b)	5,700	5,700	5,700	5,700	5,700	28,500

4. 작성자

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담당관

담 당 관 주병준

추계세제팀장 김중헌

추계분석관 김지혜

☎ 02-2180-7952

e-mail: kjh0123@seoul.go.kr

Ⅱ. 비용추계의 상세내역

1. 비용요소

○ 서울특별시 재난안전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제9조(위원회 설치)에 따라 비용이 발생

2. 세부추계내역

○ 총비용(합계) ≒ 28,500천원(연평균 5,700천원)

(단위 : 천원)

구분	연도	1차년도	2차년도	3차년도	4차년도	5차년도	합계
지출 -	○제9조(위원회 설치)	5,700	5,700	5,700	5,700	5,700	28,500
시눌	소계(a)	5,700	5,700	5,700	5,700	5,700	28,500
٨٥١	-	-	-	-	-	-	-
수입	소계(b)	-	-	-	-	-	-
	□총 비용(a-b)	5,700	5,700	5,700	5,700	5,700	28,500

○ 재난안전산업 진흥위원회 = 28,500천원

= 참석수당+업무추진경비

= 24,000천원+4,500천원

- 참석수당 = 24,000천원

= 수당단가 \times 지급인원 \times 연2회 \times 5년

= 200천원×12명×2회×5년

※ 지급인원 : 위원 15명 중 공무원(당연직) 3명은 제외

- ※ 참석수당 단가: 「서울시 예산편성 운영기준」에 따라 2시간 초과 200천원 적용
- 업무추진경비 = 4,500천원
 - = 경비단가×지급인원×연2회×5년
 - = 30천원×15명×2회×5년
- * 업무추진경비 단가: 「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17조(사교·의례 등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·경조사비 등의 가액 범위) [별표1] 음식물 경조사비 선물 등의 가액범위(제17조 관련)에 따라 30천원 수준으로 적용